

예산총칙

202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25,711,186	30,771,336
일반회계	1,002,272,361	30,068,171
특별회계	23,438,825	703,165
공기업특별회계	11,086,498	332,595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1,086,498	332,595
기타특별회계	12,352,327	370,570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71,798	2,15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94,476	32,834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2,900	1,287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1,600	948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688,880	20,666
수질개선 특별회계	7,686,896	230,607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2,735,777	82,07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530,32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2,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